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노동부, 법조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최재혁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제 목 재벌총수와 대기업에게 또 다시 면죄부를 준 검찰

날 짜 2015. 12. 22. (총 1 쪽)

논 평

재벌총수와 대기업에게 또 다시 면죄부를 준 검찰 현대차가 자신의 위법 몰랐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 불법파견은 검찰이 외면하고 정부·여당이 방조한 탓, 개정안 폐기해야

1. 현대자동차와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등을 상대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등이 제기한 파견법 위반 고소·고발에 대해 검찰은 대부분의 경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을 재벌총수와 재벌대기업에 대한 면죄부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2.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 위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 알지 못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동원했다.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에 대한 문제제기는 최소 10년 전의 일인데 현대자동차가 자신의 공정과 사내하청구조가 파견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현대자동차가 자신의 위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현대자동차의 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2004년 노동부가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검찰은 현대자동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로 인해 10년이 넘도록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3. 이와 같이 검찰이 비상식적인 논리를 동원하여 재벌대기업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직권상정 해서라도 통과시키고자하는 파

견법과 더불어 모든 산업에 만연한 불법과건을 합법화하고 간접고용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파견법은 파견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불법과건과 관련한 기존 판례보다 후퇴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또한, 파견법을 회피하기 위해 남용되고 있는 사용자의 불·편법을 합법화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검찰이 함께 불법과건에 대한 법적 규율을 후퇴시키고 그 적용조차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4.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은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이 불법과건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저 현대자동차가 자신의 위법함을 몰랐다는 의미이다. 검찰은 2006년에 이은 2번째 무혐의 처분으로 불법과건을 해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다시 한 번 저버렸다. 지금부터 불법과건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은 모두 검찰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현대자동차가 자신의 위법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검찰이 현대자동차의 죄를 외면한 것이며 이를 방조한 정부·여당의 책임이다. 불법과건 양산할 정부·여당의 파견법 개정안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끝.